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4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지쿠퍼
2. 대표자: 서정훈
3.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254번지
4. 설립허가일: 2018. 12. 7.
5. 설립목적: 전라북도 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 정신을 확산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큐빅스(강태우), ② 두산건설(주)(이병화), ③ (주)건화(최진상)
 - 나. 전화번호 : ① 031-625-9500, ② 02-510-3272 ③ 031-340-7500
2. 명칭 : 협소공간에 교각 설치를 위해 교량받침 구조 개선을 통한 교좌면 최소화 받침 적용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교량받침의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여 필요연단거리를 만족하면서 교대 교좌 및 구체,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일 수 있으며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상부구조 경간장의 축소로 모멘트와 반력을 감소시켜 교대 및 교각, 기초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부구조의 경간장이 줄어들어 따라 형고가 감소되므로 공사비 절감, 시공성 개선 등 설계 적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대 구체부, 교각 코핑부의 부피 감소로 건조수축 및 온도 철근,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교좌부 적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

<범위>

교량받침의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를 소형화하여 협소공간에 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게 함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줄일 수 있고 상부구조의 형고를 낮출 수 있는 교좌부 설계 적용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4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릴 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나. 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heiyu82@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2, 044-201-3799,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